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우리 회헌에서 답을 찾을수 있는 자주 대두되는 질문들: 이번 주부터 다음 몇 주동안 섬기는 지도자 지침서 2010년 개정판에 제시된 몇 가지 질문들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다. 평의회나 형제회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자주 제기됨으로써 회헌을 잘 아는 것이 각 등급의 형제회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전체 문서의 최신판 완역본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오: <https://ciofs.info/library/official-documents/> or <https://www.secularfranciscansusa.org/the-general-constitutions-of-the-secular-franciscan-order-2000/>

1회, 울수 3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와의 영적, 사목적 관계는 어떤 것인가?

+ **활기찬 상호 교류와 영적 보조자의 역할** [89-90 조] (좀 더 자세하고 완전한 정보를 위해서는, 회헌 85-88조, 국가 규정, 국제 규정과 영적보조의 지침서를 읽어 보시오:)

회칙 89-90조 영적 보조자의 역할

회헌 89조

1. 프란치스칸 수도자와 재속 형제회원 간의 활기찬 상호교류와 상급 장상의 책임있는 보살핌으로, 재속프란치스코회의 각급형제회에 대한 영적보조는 친교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2. 영적보조자는 권한있는 상급 장상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특정 형제회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3. 프란치스칸 영성의 증인과 재속프란치스칸에 대한 수도자의 형제적 사랑의 증인으로서, 또한 자신이 속한 수도회와 재속프란치스코회간의 유대를 위해 영적보조자는 1회나 울수3회에 속한 프란치스칸 수도자여야 한다.
4. 형제회에 이러한 영적보조자를 줄 수 없을 때, 권한 있는 상급 장상은 영적보조의 일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다.
 - 가) 다른 프란치스칸 수도회에 속한 남녀 수도자
 - 나) 특별히 이 봉사를 위해 준비된 재속프란치스코회에 속한 교구 사제나 평신도 회원
 - 다) 일반 교구 사제나 프란치스칸이 아닌 수도자
5. 장상이나 그 지역 교구장의 앞선 권한이 필요할 때라도 사목적 봉사와 영적보조의 질에 대한 프란치스칸 상급 장상의 책임을 면해 주지는 않는다.

회헌 90조

1. 영적보조자의 주 임무는 프란치스칸 영성을 회원에게 전달해 주고 회원의 초기 및 영속적 양성에 협조하는 일이다.
2. 영적보조자는 자신이 영적보조를 하고 있는 형제회 평의회 투표권을 가진 법적인 구성원이다. 그러나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90조 3항도 읽으시오) [* 선거에 있어서의 영적, 사목적 보조에 대한 국가 규정을 보시오.]

회헌 89조와 90조를 읽고 다음을 토론해 보시오.

- + 당신의 단위형제회는 영적보조자가 있습니까? 수도회나, 교구 사제나, 재속프란치스칸의 일원입니까?
- + 영적보조자는 당신의 형제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 당신의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는 회헌 90조 1항을 어떻게 완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재속프란치스칸인 당신의 성소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